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수처 인력 증원 등 〉

■ 이성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05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공수처 수사대상을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4
2.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범위 확대	9
3. 공수처 기소권 범위를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	15
4. 공수처 검사, 수사관 및 행정직원 정원 확대 등	19
5. 공수처 검사 임기연장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5
6. 공수처장 및 차장의 대우를 각각 장관 및 차관급으로 격상	31
7.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및 수사관 결격사유 확대 등	33
8.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고발 등 의무 부과	40
9.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이첩 규정 정비 및 수 사협의회 설치	44

10.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는 등 독립성 강화 ..	53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 신설	58
12. 기타 개정 사항	6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성윤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4. 7. 4.
3.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가지고 탄생함. 현재의 공수처는 인력난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며(안 제8조제2항), 공수처 수사관의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여(안 제10조), 우수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중도이탈을 막고자 함.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수사기관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관할이 되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4호).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수처 구성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항, 제22조제2항).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공수처 고발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장기 방치 사건의 이첩권 남용을 제한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안 제24조),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의 방지 등을 위해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1개월에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공수처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공수처의 임면,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3조제3항, 제44조의3).

Ⅲ. 검토의견

1. 공수처 수사대상을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1.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대법원장 및 대법관</u>	다. <u>대법원장, 대법관 및 판사</u>

라.~차. (생략) 가. <u>검찰총장</u> 타. (생략) 파. <u>판사 및 검사</u> 하. <u>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u>	라.~차. (현행과 같음) 가. <u>검찰총장 및 검사</u> 타. (현행과 같음) 파. <u><삭제></u> 하. <u>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u> <u>(이하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u>
거.~더. (생략) <u><신설></u>	거.~더. (현행과 같음) 러.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u>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u> <u>속하는 공무원</u>

나. 검토의견

현행 공수처법은 국가기관 소속 공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판사 및 검사는 전원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신분 또는 소속기관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개정안 도입 시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수는 현재 기준 약 7,100명¹⁾에서 고위공무원단 1,558명²⁾이 추가되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 판사 정원 3,214명(「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 검사 정원 2,292명(「검사정원법」 제1조),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118명(23. 7. 기준), 정무직 공무원 125명(24. 6. 기준) 등을 포함한 예상 수치임.

2) 인사혁신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 2024. 6., 33p.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3)에 따르면 정무직공무원이란
 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②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함.

전자 중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의 예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
 무원의 예로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 있음. 또한,
 후자의 예로는 행정각부의 장·차관⁴⁾ 및 각 개별 법률에서 정무직공
 무원으로 지정하는 기관장 등이 있음.⁵⁾

다만, 서울특별시 부시장,⁶⁾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⁷⁾ 특별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
 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4)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행정각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
 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
 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5) 대통령비서실장(「정부조직법」 제14조제2항),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 제4조제2항), 국가정보원장·
 차장(「국가정보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국무조정실장·차장(「정부조직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위원(「감사원법」 제5조제2항) 등 다수

6)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
 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
 한다.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
 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
 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
 ·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감찰관⁸⁾ 등 정무직공무원임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⁹⁾가 존재하고, 반대로 현행 공수처법상 정무직공무원이 아닌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예도 존재하는바,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음.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정무직공무원 제외)>

구분	소속기관	근거조항(공수처법)
3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제2조제1호아목·더목
판사 및 검사	법원·검찰	제2조제1호파목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경찰	제2조제1호하목
장성급 장교	국방부	제2조제1호거목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금융감독원	제2조제1호너목

개정안의 경우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부분 정무직공무원에 한정되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¹⁰⁾에 따른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 8) 「특별감찰관법」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9) 해당 기관의 경우 공수처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규정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 10)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고위공무원까지 일반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전담하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도 담당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다만, 공수처는 정원이 85명 규모인 조직이고 아직 기관형성의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일반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한다면 수사의 선택·집중 곤란과 수사권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 행정의 소극성 내지 위축 등을 초래한다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 확대 문제는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의 공정성·신뢰성, 수사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행정에 미치는 위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사안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정부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국장급 직위를 담당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로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섭할 필요성이 있어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수사대상에 고위공무원단을 추가하는 것은 공수처법 제정 당시의 국회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조정, 권한배분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2.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범위 확대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 제2조제3호는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 공직자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형법상 공무원직무 범죄(직권남용죄 등), ② 직무관련 형법상 문서죄(공문서위조죄 등), ③ 직무관련 형법상 재산죄(횡령죄, 배임죄 등), ④ 특별법상 금품수수죄(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 ⑤ 기타 범죄(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등), ⑥ 앞서 언급한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현행 공수처법(제2조제3호)상 고위공직자범죄 종류>

유형	범죄행위	관련규정	
공무원 직무 범죄	「형법」 위반	직무유기(§122)	선거방해(§128)
		직권남용(§123)	수뢰 사전수뢰(§129)
		불법체포 불법감금(§124)	제삼자뇌물제공(§130)
		폭행, 가혹행위(§125)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131)
		피의사실공표(§126)	알선수뢰(§132)
		공무상 비밀의 누설(§127)	뇌물공여등(§133)
직무관련 문서죄	직무와 관련한 「형법」 위반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144) 공문서등의 위조·변조(§225), 허위공문서작성등(§227) 공전자기록위작·변작(§227의2),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229)	
직무관련 재산죄	직무와 관련한 「형법」 위반	횡령, 배임(§355)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356)
		배임수증재(§357)	미수범(§359)
특별법상 금품수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 (§3)		
	「변호사법」상 청탁명목금품수수죄 (§111)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45)		
기타 범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21), 직권남용죄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등의 죄(§14)		
범죄수익 은닉죄	각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및 §4 위반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강요죄, 공갈죄, 「변호사법」 제109조의 죄를 추가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이하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는 모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죄, 장물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그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략)	1. ~ 2. (생략)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3. ----- ----- ----- ----- -----.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 ----- ----- ----- 포함한다. 이하 같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생략)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아. (생략)

<신설>

4. (생략)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나. -----

-----한정한
다), 제324조, 제350조, 제355조부터 -----
-----죄

다. (현행과 같음)

라.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죄

마.~아. (현행과 같음)

4.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란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를 말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가.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죄

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u>제156조까지의 죄</u>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u>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u>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u>제3호와 제4호의 죄</u>를 말한다.	<u>죄</u> 다. ----- ----- ----- --- <u>제156조까지 및 제362조의 죄</u>, ----- ----- 라. <u>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그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u> 6. ----- ----- <u>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u> -----.
--	--

나. 검토의견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기존 수사기관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보장이라는 측면과 수사권 분산에 따른 비효율 우려 등의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형법」 제324조가 규정하는 강요죄¹¹⁾ 및 같은 법 제350조가 규정하는 공갈죄¹²⁾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인 직권남용죄¹³⁾가 이미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강요·공갈행위는 이미 대부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므로, 「형법」상 강요죄 및 공갈죄를 수사대상으로 추가할 실익이 있는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둘째, 개정안은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패 또는 비리와 무관한 일반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공수처법 제2조제4호라목¹⁴⁾은 수사대상이 되는 관련법

-
- 11)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3)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그 주체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려는바, 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가 모호하여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개정안에서 수사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강요죄, 공갈죄 등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부패 과정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고,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는 공수처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이며, 현행법은 관련 인지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범죄만을 수사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직무와 무관한 고위공직자의 개인적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은 운영 목적·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조정, 권한배분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의 의견제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3. 공수처 기소권 범위를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 제3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하여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u>다음 각 호에</u>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 ----- <u>수사, 공소의 제기</u> <u>및 그 유지에</u> ----- -----(<u>이하 “공수처”라</u> ----)------.
1. <u>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u>	1.~2. <삭 제>
2. <u>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u>	

나. 검토의견

현행 공수처법 제3조제1항¹⁵⁾은 수사권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¹⁶⁾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기소권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경무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정 당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제기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형사절차에서의 정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¹⁷⁾ ②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독립된 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권을 한정한 것으로 보임.¹⁸⁾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입법부·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3.4, p.27.

1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토보고」, 2019. 6, p.47.

행정부·사법부 및 헌법기관(헌법재판소·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 소속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범죄를 행한 민간인에 대하여 기소권을 갖게 됨.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 대상의 비교>

구 분			현행		개정안	
			수사권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
고위 공직자 (가족 포함)	사법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	
	수사기관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입법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	○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인보실·대통령경호처·국기장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장성급 장교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법부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정무직공무원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감사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관련범죄를 저지른 민간인 (공동정범·종범·교사범, 뇌물공여, 범인은닉, 국회위증 등)			○	×	○	○

공수처의 기소권 확대는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행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¹⁹⁾ 현행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사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반영²⁰⁾한 것이라는 점 또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기관

19) 2017년 10월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자체방안’에서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권한을 모두 갖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부패척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었음.(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방안 제시」, 2017년 10월 15일)

20) 2020. 2. 4. 및 2022. 5. 9. 두 차례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는 등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수정한바 있음.

으로서의 종국적인 판단 권한을 갖지 못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범죄를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실상 검찰 견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립하면서 판사·검사 등의 일부 범죄에 한정하여 기소권을 부여한 것인데,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이라는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조정, 권한배분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의 의견제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4. 공수처 검사, 수사관 및 행정직원 정원 확대 등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제4조 및 제8조제2항), 40명 이내의 수사관(제10조제2항)으로 구성됨.²¹⁾

개정안은 검사의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의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행정직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0조 및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생략) ② <u>수사처검사</u> 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u>25명</u> 이내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8조(<u>공수처</u> 검사) ① (생략) ② <u>공수처</u> 검사는 ----- ----- ---- <u>30명 이상 50명</u> ---- --. ③ ~ ④ (생략)
제10조(<u>수사처수사관</u>) ① (생략)	제10조(<u>공수처</u> 수사관) ① (생략)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② <u>수사처수사관</u>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u>40명</u>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u>수사처수사관</u>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생략)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u>수사처</u>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20명</u> 이내로 한다. <u><신설></u>	략) ② <u>공수처 수사관</u>은 -----, <u>50명 이상 70명</u> ----- - <u>공수처 수사관</u>의 -----. ③ (생략)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u>공수처</u>의 -----. ② ----- <u>60명</u> -----. 제44조의2(임기제공무원) <u>공수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현재 공수처 인원은 85명임. 참고로 검찰 정원은 8,453명²²⁾이며 경찰 정원은 131,004명²³⁾임.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수는 약 7,100명, 이 중 기소대상자는 약 5,600명으로 각각 추산되고, 2021년 1월 공

22) 대검찰청, 「2023년 검찰연감」, 2023

23) 경찰청, 「2022년 경찰통계연보」, 2023

수처 출범 후 약 3년간 접수된 총 사건의 수는 8,501건(2024. 4. 30. 기준)임.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는 범죄를 범한 고위공직자의 수사 관여 가능성이 타 범죄에 비해 높아 수사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직원의 경우 ① 타 수사기관과 비교하여 검사정원 대비 검사의 인력 정원이 부족한 점, ② 공수처는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 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예산·인사업무 등 기본적인 행정인력 소요가 존재한다는 점, ③ 현재 인력 부족으로 행정직원 정원(20명)보다 많은 수의 파견공무원(22명)이 공수처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직원의 증원 필요성은 있음.

<공수처와 검찰청의 검사 정원 대비 검사의 정원 비율 비교>

기관*	검사정원	검사외인력 정원	검사대비 검사의 인력 비율
청주지검	38명	131명	3.45배
창원지검	43명	175명	4.07배
부천시청	43명	142명	3.30배
안양지청	34명	102명	3.00배
천안지청	35명	110명	3.14배
대구서부지청	35명	121명	3.45배
검찰청 전체	2292명	8453명	3.69배
공수처	25명	60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2.4배

*지검 및 지청 자료는 일부만 무작위 기재하였음

**자료 : 2023년 검찰연감

<공수처 중요 조직기능의 담당 현황(2024.4.30. 기준)>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인사	검사 인사	소속직원(행정6)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6)
	공무직 인사	파견(지자체7)
총무	물품관리(물품관리관)	파견(행정5)
	과 서무	파견(국가7)
회계	회계·계약(지출원)	파견(지자체5)
	급여·복지후생	소속직원(행정6)
조직	직제·조직진단	파견(지자체5)
정보화	정보화 총괄	파견(전산6)
	KICS 총괄	소속직원(전산6)

*자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공수처는 출범 3년차로 업무모델을 우선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공수처 현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²⁴⁾ 수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인건비 집행 역시 부진하므로, 정원 미달 인원 충원 및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24. 6.) 기준 검사의 현원은 20명으로 총 5명의 결원이 있고, 수사관의 현원은 36명으로 총 4명의 결원이 있음.

<2022~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도			2023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23,721	18,302	77.1%	17,683	15,461	87.4%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001-300)	5,793 ¹⁾	5,089	87.8%	1,925	1,916	99.5%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001-301)	3,375 ²⁾	2,274	67.3%	1,170	1,163	99.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2,363	1,181	49.9%	1,970	1,344	68.2%
공판활동지원 (1012-301)	103	62	60.1%	53	9	17.0%
공수처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7,816	6,384	81.6%	8,161	7,111	87.1%
공수처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1,718	1,588	92.4%	1,707	1,829	107.1%
공수처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2,553	1,724	67.5%	2,697	2,089	77.5%

* 주 1) 제2회 추경예산 18억 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600만원을 합한 금액임.

2) 제2회 추경예산 33억 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00만원을 합한 금액임.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외에, 공무원 정원 증원 시 예산상의 조치가 반드시 병행²⁵⁾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인력운용 현황, 타 수사기관 대비 1인당 업무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수사 및 행정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원

25) 「정부조직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신분 보장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공수처법 제정 이후 수사대상과 대상 범죄의 변동이 없고, 그 외에도 공수처 인원을 증원하거나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수처 출범 후 줄곧 공수처 검사의 현원이 공수처법 제정 당시에 규정한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의 인력운용 현황, 공수처 인력의 1인당 업무량, 공수처 업무수요 예측,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5. 공수처 검사 임기연장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여 최대 9년까지로 연임을 제한하였고, 공수처 소속 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음.

또한,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으로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규정하였고, 수사관은 ① 변호사, ②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③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에 대한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음.

개정안은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요건을 삭제하며, 공수처 소속 수사관의 임기를 폐지하고 임명 요건을 공수처규칙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u>수사처검사</u> 는 <u>7년 이상 변호사의</u>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u>수사처검사</u>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8조(공수처 검사) ① <u>공수처 검사</u> 는 <u>변호사의</u> ----- ----- ----- ----- ----- <u>공수처 검사</u> ----- -----.

② (생 략) ③ <u>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u>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생 략) 제10조(<u>수사처수사관</u>) ① <u>수사처 수사관</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생 략) ③ <u>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u>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u>정년은 60세로</u> 한다.	② (생 략) ③ <u>공수처 검사의 ----- 7년</u>으로 하고, 3회에 ----- -----. ④ (생 략) 제10조(<u>공수처 수사관</u>) ① <u>공수처 수사관</u>은 <u>공수처규칙에</u> 정한 <u>자격과 경력을</u> 갖춘 ----- -----. 1.~3. <삭 제> ② (생 략) ③ <u>공수처 수사관의 정년은 60</u>세로 한다.
---	---

나. 검토의견

공수처법 제8조²⁶⁾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임. 그런데 공수처 최초 출범 당시 검사로 임용되었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만료 전 퇴직하였고, 2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연임하여 연임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검사 20명의 재직기간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재직자 수는 1명이고, 2년 이상 재직자 수도 도합 6명으로 공수처 출범(2021년 1월 21일) 후 약 3년 5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중 2년 이상 재직자 비율은 30%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의 경우 임기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인데, 현원 36명 중 2년 이상 재직 수사관 수는 23명으로 64.9%였고, 최근 3년간 퇴직자 수는 총 15명으로 연평균 5명이었음.

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재직기간별 인원수>

(단위: 명)

구분	0 ~ 1년	1 ~ 2년	2 ~ 3년	3년 이상	합계
검사	8	6	5	1	20
수사관	2	11	13	10	3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 3년간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퇴직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검사	채용인원	21	3	10	0	34
	퇴직인원	0	5	7	4	16
수사관	채용인원	33	12	3	1	49
	퇴직인원	0	8	3	4	1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같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이 높을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어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조직 운영을 불안정하게 함.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의 임명요건이 까다롭고 임기제가 적용됨에 따라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 저해와 전문성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음.²⁷⁾²⁸⁾

이에 개정안은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7년

27) 뉴시스,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 연임 좌절…‘신분불안’”, 2024. 2. 20.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0_0002632636&cID=10201&pID=10200

28) 검찰청 검사는 7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받고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 임명 가능함. 또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의 경우에도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법정된 자격요건 또한 없음.

이상의 변호사 경력 요건을 삭제하며, 공수처 소속 수사관의 임기를 폐지하고 임명 요건을 공수처규칙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검사 및 수사관의 신분이 안정되고 공수처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한을 둔 취지는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권력유착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로 보이는데,²⁹⁾ 2020년 공수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공수처 소속 검사의 경력요건 완화의 경우 공직자 부패수사는 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수사 전문성 및 경험이 요구되므로 그 자격요건 완화가 단기적으로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공수처의 수사처검사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³⁰⁾에 따른 특별검사보의 경우에도 7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판사·검사·변호사³¹⁾)을 요구하고

29)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방안 제시’, 2017년 10월 15일

3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젊고 참신한 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업무의 연속성 보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수사관 임기의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하되, 검사의 경우에도 임기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공수처법이 3년의 임기제를 도입했다는 점, 수사관에 대하여도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임기제를 도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의 인력운용 현황, 공수처 인력의 1인당 업무량, 공수처 업무수요 예측,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31)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한 사람

6. 공수처장 및 차장의 대우를 각각 장관 및 차관급으로 격상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은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에 준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하고 있음.³²⁾

개정안은 공수처장은 장관 대우, 차장은 차관급 대우로 격상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u>차관</u> 의 예에 준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u>장관</u> 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u>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u> 의 예에 준한다.	② ----- <u>차관</u> ----- -----.
③ ~ ④ (생략)	③ ~ ④ (생략)

나. 검토의견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및 차장의 대우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비해 낮아 적극적인 수사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수처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다만, 현재 공수처는 정원 85명 규모의 조직이므로 수사권한 확대와 처우개선 동시 추진 시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및 검찰 견제라는 설립취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처장의 보수·대우를 장관급으로, 차장의 보수·대우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어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공수처가 검찰권의 견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지라도 이러한 권한·역할은 공수처장·차장의 직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업무수행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수처장·차장의 보수·대우 상향은 불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및 수사관 결격사유 확대 등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 제13조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³³⁾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수처의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공수처에 임명될 수 없는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②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및 ③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임명될

33) 「국가공무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 없도록 규정하여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공수처 소속 공무원
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u>수사처검사</u> , <u>수사처수사관</u> 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 ----- -----, <u>공수처 검사</u> , <u>공수처 수사관</u> 으로 -----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u>2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 <u>3년</u> ----- -----
<신설>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7.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u>5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

립) <u>수사처 소속 공무원</u>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립) ① <u>공수처 소속 공무원(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은 ----- ----- -----. ② <u>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	--

나. 검토의견

“결격사유”란 임용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함. 안 제13조제1항은 대통령비서실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의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 및 최근 5년 이내에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을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최근에 정치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의 공수처 임용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안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수처 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의 결격사유 내용>

<변경>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u>2년</u> 미경과자 → <u>3년</u> 미경과자 <신설> -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일부터 3년 미경과자 -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 미경과자
--

권력형 비리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공수처 업무의 특성상 그 구성원에게는 고도의 윤리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정치적 성향이 표명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임용을 제한하여 공수처 구성의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는 인정됨.

참고로, 공수처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특별검사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결격사유로 당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나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음.³⁴⁾

<결격사유 유사입법례(특별검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4) 개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용하는 법률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을 기간제한 없이 결격사유로 명시한 사례가 있음.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또한, 안 제22조는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를 구체화하였는바,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경찰공무원법」 제23조³⁵⁾는 안 제22조와 동일하게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결격사유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에게 검사나 경찰과는 다른 결격사유를

-
- 35)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검찰과 경찰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는 과거의 정치경력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검사는 현행 「공수처법」 제13조제1항³⁶⁾과 동일하게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결격사유에 두고 있을 뿐 그 외의 정치적 활동은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³⁷⁾

<검찰과 경찰의 결격사유 조항>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6) 「공수처법」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7)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당원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나. (생략)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결격사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수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과 기본권과의 조화 여부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당·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84조에서 그 위반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수처법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법무부는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법원조직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고발 등 의무 부과

가.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도록 하고, 감사원·국세청 등 특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u>수사처</u> 검사는 <u>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u>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3조(공수처 검사의 수사) ① <u>공수처</u> 검사는 <u>고위공직자범죄등의</u> ----- ----- -----.
<u><신 설></u>	② <u>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알게 된 때에는</u>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③ <u>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특별감찰관은</u> <u>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하여는</u>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공무원과 ②수사·감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금융감독원·특별감찰관 등)으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개정안 도입 시 공무원의 내부고발 및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기 위한 단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도입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감사 및 내부징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고발이 소속 기관 상급자 등에 대한 내부고발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고발한 공무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참고로, 공수처법 제46조³⁸⁾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실명 내부고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을 규정³⁹⁾하였음.

셋째,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등 또는 이와 밀접하게 연계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면 중복수사 등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에 의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내부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결론적으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부패수사기구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고발한 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보완 필요성과 타 수사기관과의 수사 중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공무원의 일반적인 고발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제234조제2항), 다른 법률에도 고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 대한 고발 의무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이첩 규정 정비 및 수사협의회 설치

가.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첩을 제한하되(안 제24조제4항), 해당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인지 통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한 경우 이첩요청에 응하도록 하였음(안 제24조제5항).

또한, 공수처 검사가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안 제24조제6항), 공수처에 접수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사건 및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상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4조제8항),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는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24조제9항).

끝으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의 방지, 수사 및 공소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신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수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그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② -----

-----공수처-----
--.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

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공수처 규칙-----

-----.

⑤ 다른 수사기관이 제2항의 통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은 제4항의 이첩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수처 검사가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경우에 처장은 공수처에 접수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이첩을 하고자 하는 상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수사기관 및 공수처가 이첩을 하고자 하는 상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의 고

<신 설>

위공직자범죄는 검찰로 이첩할 수 없다.

제24조의2(수사협의회) ① 공수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의 방지, 수사 및 공소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둔다.

② 수사협의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수사협의회장은 1년에 1회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사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⑤ 수사협의회는 논의·협의·조정 대상과 수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수사협의회는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 밑에 수사협

	<u>의실무지원단을 둔다.</u> <u>⑦ 사무국과 수사협의실무지원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협의회 규칙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2021년 1월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 검찰청, 경찰청 및 공수처 간 수사권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수사 및 수사기관간 갈등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⁴⁰⁾

공수처법 제24조는 범죄수사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수사권 중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동안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이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무상 중복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⁴¹⁾

40) 중앙일보, "첩보 가로챘다"...일만 터지면 검·경·공수처 '초유의 중복수사', 2024. 9. 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8203>

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또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3조(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 ①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

중복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모순될 경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사건 이첩 요청을 다른 수사기관의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어 장기 미제 사건 등에 대하여도 공수처장이 타 수사기관에게 제한없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등 수사기관간 사건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수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이첩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사협의회를 두어 각 수사기관간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간 수사 관련 협의·조정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간 권한 배분 문제의 원활한 해결 및 중복수사 방지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범죄혐의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2. 사건의 중대성
3.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4.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②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 제1항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요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우선, 사건 이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이첩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면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시 통보의무를 해태한 경우 이첩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이첩 여부는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의무 해태에 따른 일종의 벌칙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고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통보의무를 해태할 경우 이첩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안 제24조제5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수사협의회 신설의 경우 현행 공수처법이 공수처를 설립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권력간 견제와 균형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반영⁴²⁾한 것인데, 수사협의회라는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 기관이 수사기관간 권한 경합의 협의·조정을 담당한다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에 수시로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의 경우 수사협회의 협의·조정 대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수사협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구성의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 2020. 2. 4. 및 2022. 5. 9. 두 차례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는 등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수정한바 있음.

또한, 공수처법은 공수처 사건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공수처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수사협의회는 각 수사기관간 권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안 제24조의 경우 공수처장의 이첩요청에 대해 상대 수사기관에서 적절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면 사건이첩요청권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고, 이첩 시 상대 수사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안 제24조의2의 경우 수사기관간 협의·조정을 위하여 수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수사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협회의의 소속 결정이나 보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안 제24조의 경우 공수처에 이첩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수처에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이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및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외 범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까지 일절 예외 없이 검찰에 이첩할 수 없다면,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없는 사건들까지 공수처에 집중됨으로써 수사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안 제24조의2의 경우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수사협의회장이 발간한 백서를 국

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침해, 보고·지휘 권한 없는 자의 개입, 수사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법원행정처는 안 제24조의 경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조정, 권한배분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의 의견제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안 제24조의2의 경우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 조정, 중복수사 방지, 관련 제도 개선 및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은 업무 방식 및 범위, 현재 유사 제도와의 장단점 비교,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10.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는 등 독립성 강화

가.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 시 공수처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할 의무를 선언하고,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하는 등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6조 및 제44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 ② (생략) ③ <u>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공수처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u>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⑤ (생략) ⑥ <u>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u> <u><신설></u>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⑤ (생략) <u><삭제></u> 제44조의3(예산회계) ① <u>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u> ② <u>공수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규칙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공수처법 제3조⁴³⁾는 고도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수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안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 시 공수처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명시할 경우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공수처법 제17조제6항⁴⁴⁾은 예산과 관련하여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⁴⁵⁾에 따른 중앙관서로 규정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음.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규정⁴⁶⁾함. 독립기관은 예산 편성 시 해당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독립기관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에 비

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45)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6)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해 독립성을 높게 보장⁴⁷⁾하고 있음.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으로 명시할 경우 공수처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시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공수처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예산과 관련한 공수처의 독립성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사한 수준까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의 독립기관은 헌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게 요구되는 독립성이 해당 기관에 준하는 수준인지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의 최초 입법 당시 논의를 살펴보면, 당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는 ‘수사처의 예산회계 처리에 대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기구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를 직무상 독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후 제정된 공수처법 제17조제6항은 처장이 공수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공수처의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시 입법자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임.⁴⁸⁾

47)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예산상 독립기관성을 부여하지 않은 정책으로 공수처 수사의 효율성, 중립성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등 예산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의 독립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준하는 예산상 자율성을 부여받은 기관으로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 있고, 공수처와 유사하게 법률로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인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바,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 해당 입법례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48) “당초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는 ‘수사처의 예산회계 처리에 대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기구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를 직무상 독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17조 제6항은 위 권고안과 달리 수사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사처의 예산상 독립성을 부정하였다.” - 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등

<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과 관련한 기존 입법례 >

구 분	관련 조문
감사원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공수처가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공직사회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므로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은 통상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고, 20대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의 독립기관이 아닌 제2항의 중앙관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 신설

가.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피고인이나 불기소처분을 한 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u>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u>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u><신설></u>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 ----- <u>공수처 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u> ----- ----- ----- ----- ----- -----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② 이 법에 따른 형사소송절차에서 구금되었던 자로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검토의견

「대한민국헌법」 제28조⁴⁹⁾ 및 형사보상법⁵⁰⁾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금의 신청대상기관이나 지급기관에 법원과 검찰만 규정할 뿐 공수처는 명시하지 않았고, 공수처법에 형사보상금 관련 내용을 규정하거나 준용하는 내용도 규정되지 않음⁵¹⁾.

<형사보상법 관련 규정>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①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49)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1) 공수처법의 다른 법률 준용 규정에서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만 명시되어 있을 뿐 형사보상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①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은 공수처법에 따른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가 구금되었던 경우, 형사보상법을 준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금되었던 피고인 등의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됨.

다만, 현행 형사보상법은 검찰청이 형사보상 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는바, 공수처법에 준용 규정을 두기보다는 형사보상법에 직접 공수처의 형사보상금 지급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관련 규정 미비로 공수처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지,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에서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공수처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률에 공수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정 방식을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기타 개정 사항

개정안은 종래 “수사처”로 약칭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을 “공수처”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수사처규칙”을 “공수처규칙”으로 각각 수정하였음.

또한, 공수처 검사가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였고(안 제20조), 공수처가 파견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서 검사를 제외하였으며(안 제44조), 공수처 검사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안 제46조의2).

끝으로, 공수처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수처 소속으로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3조의2), 공수처 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군사법원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하였음(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생략) ② <u>수사처검사</u>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u>수사처수사관</u>을	<u>제3조의2(소속기관)</u> 공수처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수처 소속으로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0조(<u>공수처 검사</u>의 직무와 권한) ① (생략) ② <u>공수처 검사</u>-----, <u>공수처 수사관</u> 및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제44조(과건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신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③ (생략)

제44조(과건공무원 등) 공수처 -----

-----공무원(다만, 검사를 제외한다)-----
-----.

제46조의2(사건의 대국민보고) 처장, 차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공수처 검사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
----- 공수처 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

-----「형사소송법」,

용한다. <신 설>	「군사법원법」-----. ② (생 략)
--------------------------------	-------------------------------------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안 제20조제2항의 경우 검사의 지휘·감독 대상은 수사부서에 배속되어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수사관 등 공무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안 제44조의 경우 수사역량이 있는 검사의 파견은 공수처 역량 축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파견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 제46조의2의 경우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그 전제로서의 수사보안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 제47조의 경우 공수처 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동의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음.

또한, 법무부는 안 제44조의 경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검사의 공수처 파견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63

